

1. 운 용 총 칙

회계년도 : 2010년
 예산차수 : 본예산
 회계구분 : 청사건립기금

① 기금설치 개요

- (1) 설치근거 :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장수군 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
- (2) 설치목적 : 청사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
- (3) 설치년도 : 2007년

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- (1) 기금사업의 목표 : 장수군 청사 건립을 위한 건축비 및 부지매입비 등으로 활용
- (2)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 : 2011년 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여 적립

③ 기금조성 및 운용

(1) 기금조성 현황

(단위 : 천원)

2009년도 말 현재액 ㉠	2010년도 조성계획			2010년도 말 현재액㉡ = ㉢ + ㉠	비 고
	수입 ㉢	지출 ㉣	증감 ㉤ = ㉢ - ㉣		
6,180,664	212,781	0	212,781	6,393,445	

- (2) 자원조성 : 자치단체 출연금, 이자수입
- (3) 지원기준 : 해당없음
- (4) 지원대상 : 해당없음